

서울 (02) 743-1937
 경기 (0335) 655-5233
 충북 (0431) 223-7832
 전북 (0652) 231-0824
 경북 (053) 422-7867
 제주 (064) 22-6907
 대전 (042) 636-9896
 부산 (051) 523-6023
 강원 (0371) 44-1415
 충남 (0417) 61-2215
 전남 (062) 522-5768
 경남 (0551) 23-1741
 인천 (032) 762-7797

양봉협회보

206호
 1997년 11월 1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 정해운 / 편집인: 김충겸 / 인쇄인: 양광호 / 발행처: (사)한국양봉협회 (우)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 763-1372 · 5903 · FAX: 764-1297

양봉농가 · 꿀벌군수 통계조사

거주지-꿀벌소재지 다른 때문 통계조사 반영안돼

통계조사기준일 12월1일, 기타가축 행정조사 착수

양봉농가 스스로 통계조사 반영율 높이기

매년 2회 발표되는 농림부 기타가축통계결과를 보면 꿀벌 사육 농가 가구수나 사육꿀벌 군수 통계수치가 현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양봉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96년말 현재 기타가축 통계에서 전국적으로 14,778호의 양봉농가에서 개량종 꿀벌 399,764 군이 사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97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해 실시된 방역대상 전국의 개량종꿀벌 650,000군으로 책정, 시행된 점에 비해 봄도 공식적인 통계수치가 방역사업량(꿀벌군수)의 61.5% 비율 밖에 안되고 있는 오차를 보이고 있고, 이를 근거로 내년 '98년도 정부예산 수립과정에서도 초기축 예산운용 방침의 일환으로 통계수치=사업량 확정 원칙으로 폐도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양봉농가 및 꿀벌군수에 관한 공식 통계수치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81년 이래로, '98년부터는 재래종/개량종, 개량종에서 이동/고정/사육규모별로 농가 호수 및 꿀벌군수를 세분화한 통계수치를 연간 2회(6월·12월말 현재를 기준) 발표하고 있다. 이중 더욱 심한 것은 광역시 지역에서 양봉농가 현황이 통계상에 제

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실수년간 행정조사로 이뤄진 꿀벌관계 기초통계결과가 아무리 신뢰성이 떨어진, 현실과 거리면 통계라고 흘려넘길 일만은 아닌 시점, 즉 정보통신시대, 첨단과학시대가 요구하는 요즘에 와서는 행정·기초과학 다방면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수치가 현실에 접근돼 있어야만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양봉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법청원문제를 거론하는 첫째 이유도 일본과 선진양봉국처럼 양봉농가들이 매년 사육꿀벌군수 및 양봉장 위치를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함으로서 꿀벌사육 현황이 실제 수치로 나타내고 이를 기반으로 제반 진흥정책 수행이 가능해 진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양봉진흥책이 건축신법에 의하건 양봉농가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의 기본자료가 통계수치부터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예기다.

이를 위해 이번 본협회는 전국 시·도지회-시·군·구 분회조직을 총동원하여 소속회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거주지별로 꿀벌통계 행정조사를 맡은 최일선 행정기관

인 시·군(읍·면·동)에 자기의 꿀벌 사육군수와 이동·고정업체 및 봉군 소재지 등 양봉사육현황을 통계조사원 책상앞에 디밀어 자진 신고하므로써 일선 행정조사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행정협조 차원의 통계조사 자진신고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협회보 발송봉투속에 「기타가축(꿀벌) 통계조사신고서」양식용지를 만들어 일제히 배포하고 있으니 시기를 놓지 말고 관할 관청에 찾아가 신고하기를 당부한다.〈8면 가축통계조사규칙 참조〉

이번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꿀벌 통계조사에 양봉농가 스스로 가담하는 운동을 확산키 위해서도 이 협회보를 받아보시는 회원 뿐

만 아니라 이웃 양봉농가들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하여 실제적인 통계수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극 선도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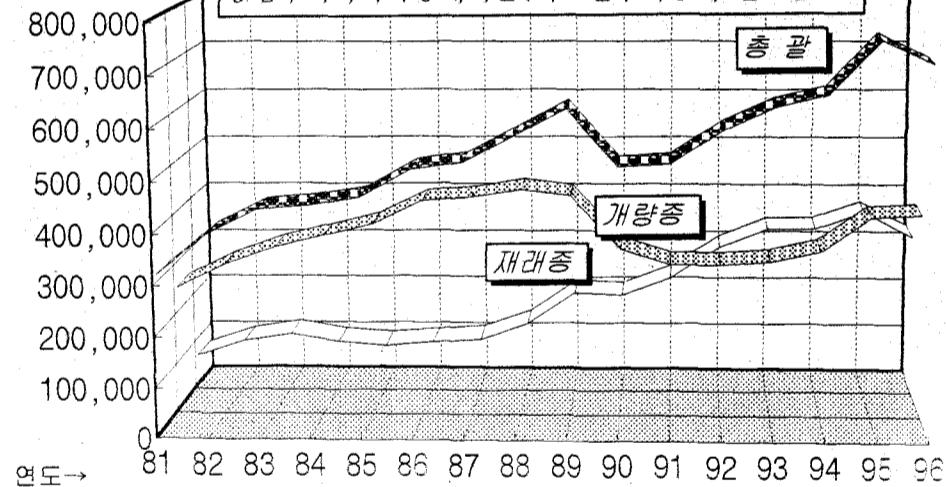
회원양봉농가들의 관할 읍·면·동에 꿀벌통계조사신고된 사항을 소속 시·군 분회장에게 통보, 분회장은 이를 취합, 집계표를 작성해서 소속지회에 통보하며 지회장은 시·도 단위 집계표를 작성·비치하여 꿀벌방역사업 등 정부정책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데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예전과 같이 행정조사 편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본협회는 지난 10월8일 대정부(농림부)에 ▲기축통계조사규칙(1996. 12. 28 농림부

령 제1246호) 관련, 현재 공표되고 있는 기타가축통계결과를 보면 꿀벌의 사육농가 및 사육군수 통계 결과가 현실과 너무 혁경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꿀벌 사육방법의 특징이 밀원(蜜源)을 찾아 꽃 따라 철따라 수시로 이동사육하는 관계로 현지 주민 양봉농가의 주소지와 사육봉군이 위치한 장소가 수시로 다를 수 있는 등 가변 요인이 큰 원인으로 통계행정조사업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지만 ▲현재 꿀벌 통계수치가 현실성이 없는 원인으로 꿀벌방역사업 시행 및 본협회의 양봉농가들 지도업무에도 큰 차오가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게 본협회로 쇄도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양봉업의 특성상 연중 3~6회 정도 빈번한 이동사육이 되므로 현지 주민·꿀벌소재 확인 위주의 통계조사보다는 주민등록거주자의 소유봉군 위주로 통계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12월 통계조사시에는 각 시·도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본협회와 공동으로 사실과 맞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견의문을 발송하였다.

연도별 꿀벌 증감추이

농림부기타가축통계기준(시도별수치통계 별표참조)



새로운 규격꿀병 발매안내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규격꿀병을 생산·공급하게 됨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판매망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는 본사제품과 유사한 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두산제품인지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꿀병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 수량

구분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구분	신2.4kg	신1.2kg	신0.6kg	신1.2kg	50g	
수량	9	16	3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④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 817-8128